

2026. 전남체육고 시간강사(일본어) 임용 공고(5차)

2026학년도 전남체육고등학교 시간강사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전 남 체 육 고 등 학 교 장

1. 임용

- 가. 임용권자: 전남체육고등학교장
-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 다.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 인원: 일본어 1명
- 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 가. 신분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 3)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4)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6. 8. 19. ~ 2027. 1. 8.

(주당 총 8시간 (수업 6시간 + 행정업무 인정 2시간) × 학기당 21주)

라. 보수: 시간당 40,000원

마. 근무시간: 시간제 근무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당하는 자
-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해당자
- 7)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 8) 전 임용학교의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 ‘종합평가’란에 ‘임용부적합’으로 평가된 기간제교원
-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83조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 접수

가. 기간: 2026. 8. 13.(목) 09:00 ~ 2026. 8. 18.(화) 15:00까지

나. 장소: 전남체육고등학교 교무실(☎061-801-0104)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전라남도교육청 및 무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마. 기타 사항: 메일,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

- 메일 : jnpschool@naver.com (메일 발송 후 전화 필)

- 우편: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로126 전남체육고등학교
(봉투에 ‘시간강사 임용 서류 재증’ 표기 필)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6. 8. 18.(화) 15:30 ~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8. 18.(화) 16: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심사): 2026. 8. 19.(수) 10:00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6. 8. 19.(수) 14:00 이후 예정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 지원서, 자기소개서, 신분증 지참	원서접수 기간
최종 합격자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중 택일(채용일 기준 1년) 1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전동의서 1부 -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단,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면제

7. **임용의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합니다.

8.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7일 이내에 붙임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시간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채용예정자의 계약 포기, 채용 결격 사유 발생,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추천하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체육고등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1-801-0104)

응시원서

응시과목
일본어

접수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한자						
		현주소		(우:)					
		e-Mail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휴대폰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학 력 사 항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 어 학	자 격			어 학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시험명	점수	취득일자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일 작성자 : (서명) 전남체육고등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를 참고하여 작성

《작 성 요 령》

- ①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 ②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 ③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〇 〇 〇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20 년 월 일

작 성 자 : 〇 〇 〇

<서식 4> 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남체육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 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